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1. 28 선고 2023가단5319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11. 7.

판결 선고2024. 11. 28.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8,520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/10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,278,52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미납 관리비 818,52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

1) 갑 제2, 5, 6,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① 피고들은 2023. 4. 16.부터 2024. 1. 17.까지 무단으로 원고 소유이던 부산 서구 D아파트, E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에서 거주하였다.

② 이 사건 아파트의 2023년 4월분부터 2023년 9월분까지의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가 합계 818,520원이다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등 합계 818,52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. 수리비 9,460,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

원고는,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서 바닥과 벽지를 훼손하여 그 수리비로 9,460,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에 대하여 위 수리비 9,460,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.

그러나 갑 제7, 9,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, 피고들이 9,460,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될 정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과 벽지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8,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성율